

## FSS/2112-23 :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계기업 B사(호텔업)의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담보금액 176억원)하고, 최대주주 C사(카지노업)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을 제공(보증액 10억원)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관계기업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최대주주를 위해 B사에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로서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18과 문단21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주석 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550(특수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들이 제공한 정보 이외의

중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의 지분구조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법인인감 사용대장 등을 징구하여 특수관계인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여부 및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K-IFRS 최초 도입으로 주석기재 필요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형식적인 검토에 그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등이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5. 시사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및 보증이나 담보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빠짐없이 공시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